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8.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목적과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 및 징수과와 합의
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미시장이 지정한 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2.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업무담당
3.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주사

제8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

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出捐)한 것으로 본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관 실 · 과		과학경제과
입 안 자	과 장	주 광 하
	담 당	박 춘 식
	담 당 자	남 동 완 (480-6196)